

**새가족 교리교육교재 「감리회 신앙생활」 2019년 4월 10일(개정판 1쇄)**

<p. 83>

지방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며 신천장로에게 장로 증서를 주며 과정을 필한 장로들에게 안수하고, 장로들의 품행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지방 안의 선교, 교육, 사회봉사, 평신도 사업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지방에는 지방회가 닫힌 동안 일을 처리할 실행부위원회를 둡니다.

수정) ▶ 지방회는 1년에 한 번씩 모이며, 지방 안의 선교, 교육, 사회봉사 및 평신도 사업의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또한 감리사는 서리전도사와 수련목회사, 장로를 개체교회에 파송합니다. 신천장로 과정을 마친 이는 장로 증서를 주며, 과정을 필한 장로들에게 안수하고, 장로들의 품행을 심사하며, 지방회 내의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지방회가 닫힌 동안 일을 처리할 지방회 실행부위원회를 둡니다.

<p. 84>

총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모이며 감독회장이 총회 의장이 되며, 각 연회에서 택한 10년 이상 정회원으로 계속 시무한 목사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들로 조직하되. 평신도 대표는 장로로 가급적 여성이 15%로 포함되도록 임명된 연수에 따라 선정합니다.

수정) ▶ 총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최고의결기관입니다.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모이는데 한 해는 총회로 정책을 결정하고, 다음 해에는 입법의회로 모여 장정을 개정합니다. 감독회장이 총회와 입법의회 의장이 되며, 총회와 각 연회의 직능 대표와 연회에서 선출된 정회원 목사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 1500명 이내로 조직하되. 평신도 대표는 가급적 여성이 15%를 포함하여 선출합니다.

<p. 85>

장로는 기회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로,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진급과정을 4년 이내에 수료하면 지방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습니다.

수정) ▶ 장로는 기회위원회의 천거를 받아 당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신천장로로 결의된 이로, 지방회에서 실시하는 신천장로 고시과정에 합격하고 지방회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품행 통과를 받고 장로증서를 받은 이어야 합니다. 그리

고 장로증서를 받고 2년의 장로 진급과정을 5년 이내에 수료하면 지방회에서 장로안수를 받습니다. 또한 타교파에서 온 장로는 이명장로과정(신천급)을 이수하고 2년간의 진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